powerful pohang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pohang 포항시

포항시보

제788호 2010. 7. 13(화)

○시장지시사항 …… 2

◀ 입법예고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제2010-683호) … 4

◀ 고 시 ▶

○포항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제2010-63호) …… 10

◀ 공 고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제2010-21호) …… 15

○어업면허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제2010-703호) …… 17

○第167回 浦項市議會(臨時會) 集會公告(포항시의회공고 제6호) …… 18

회람								

발행 : 포항시 편집 : 홍보담당관(☎270-2233) 190×268 신문용지 70g/m2

시장 지시(훈시)사항

– 2010. 7. 12(월) 불빛축제 및 해양스포츠제전 보고회 –

관리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7. 12)	○ **행사 준비 철저.** – 행사진행은 물론 시가지 정비, 친절, 숙박, 위생 등 모든면에서 우리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 **우수기에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대비 철저히 하기 바람.**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 **부서별 시정홍보 예산을 홍보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토록 하여 시정홍보에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하기 바람.**	홍보담당관실
	○ **물회 및 영일만친구 막걸리 적극 홍보.** – 행사기간 저렴한 횟감의 물회로 많은 사람들이 포항 물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홍보하기 바라며, – 북부상가번영회와 협의하여 행사기간 영일만 친구 막걸리 이외 다른 주류는 판매하지 않는 방안 검토 추진 바람.	수산진흥과 농축산과
	○ **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예우를 갖추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전 부 서

관리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지 시 110-001	○ 3대행사(불빛축제, 해양스포츠제전,도민체전) 홍보 철저 - 대구은행, 농협과 협의하여 각 지점에 홍보포스터·팸플릿 비치 및 TV를 통해 행사홍보영상물 및 시정홍보영상 방영토록 추진 바라며, 숙박업소·음식점 등에도 홍보물을 비치하기 바람.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홍보담당관실 환경위생과
지 시 110-002	○ 메인행사 및 축하공연이 있는 날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화장실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지 시 110-003	○ 3대행사 안내번호 270-8282번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행사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이 번호를 지속적으로 홍보 사용하여 우리시 안내 대표번호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정보통신과 (새마을 평생학습과)
지 시 110-004	○ 북부해수욕장 주차관리 및 버스운행 철저히 지도바람. - 피서철 및 행사기간 주차단속 철저히 하기 바라며, 북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관리(장기주차, 해수욕장 방문 외 이용 등)를 철저히 하여 외지 피서객들로부터 포항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 불빛축제일에 시내버스 연장운행 및 배차를 늘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북 구 청
지 시 110-005	○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시책개발 추진. - 앞으로 4년 동안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좋은 아이디어,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 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전 부 서)

입법예고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7월 6일

포항시 공고 제2010 - 683호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조례 제1002호 2010.5.7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수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을 조정(안 제2조)

○ 경매참가인의 복장규정을 도매시장별·도매시장법인별·부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 마련(안 제8조)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등

3. 관련법령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번지, 전화 : 054-270-5513, 팩스 : 054-270-5520)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별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 장 명	영업시간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04:00 ~ 22:00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04:00 ~ 22:00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 및 경매시작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고추, 마, 우엉, 연근, 갓, 취나물, 산나물, 다래, 고사리, 두릅, 고들빼기, 죽순,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호박고지, 박고지
2. 단무지, 절임류, 무침류, 묵류, 두부, 메주 등 농어업인이 단순 가공한 농산물로 물량이 적은 품목
3.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패류, 해조류 중 반입물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품목
4. 그 밖에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

제4조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① 조례 제69조에 따라 품목별 경매 시간 및 경매장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하물량 증가로 경매장시설이 부족하여 임시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거래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거래관계자의 표시) ① 조례 제87조에 따라 도매시장 내에서 경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거래참가증을 패용하고 별표 2에 정하는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도매시장별ㆍ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 이라 한다)별ㆍ부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도매업무의 대행) 조례 제121조에 따른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업무대행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조례 제91조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부류의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 중에서 가장 우

수한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 시장이 판단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적격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없을 경우, 다른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제7조(장비의 확보) ① 조례 제113조에 따라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경매기 및 전산처리(컴퓨터)장비, 전자식 계량기
2. 수송차량 및 하역장비
3. 방송시설, 메가폰, 청소 및 방역장비
4.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5. 그 밖에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비 및 용기

제8조(벌점제도) ① 조례 제119조에 의한 벌점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벌점(점)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0.5
	2회 위반	1
	3회 위반	2
그 밖에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시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0.2
	2회 위반	0.5
	3회 위반	1

② 제1항의 벌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벌점(점)
주의		3
경고		5
업무정지	10일	10
	15일	15
	30일 이상	30

③ 벌점 적용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누적점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품 목		경매시간	경매장소
청과부류	과실류	04:00 ~ 경매종료시까지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동 경매장
	채소류 및 기타 작물류	04:00 ~ 경매종료시까지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동 및 트럭단위판매 경매장
수산부류	수산품목 전부	04:00 ~ 경매종료시까지	포항시수산물도매시장 내 경매장
그 밖의 품목	단순가공 농산품 등	04:00 ~ 경매종료시까지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동 및 트럭단위판매 경매장

[별표 2]

거래관계자의 복장

거래관계자	표시구분	바탕색	표시글자
경매사	모자	군청색	앞면에 황색 글씨로 “경매사”라 표시
중도매인	모자	주된 경매 참가 도매법인별 표시	앞면에 중도매업 허가번호 표시
매매참가인	모자		앞면에 매매참가인 등록번호 표시

※ 규격, 색깔, 글씨 등은 시장별로 별도 정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 시

포항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7. 9

포항시 고시 제 2010 - 63 호

포항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1. 사업의 명칭 : 포항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2. 사업의 목적 :

- 단계별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중 일부를 시장수요에 따라 선시행하여 산업단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실수요자의 요구에따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변경(포항시 고시 제2010-54호)고시함에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획지분할 및 주차장 위치변경)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산97번지 일원
- 면적 : 149,500㎡

4. 시행자

- 포항시

5.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6. 시행방식

- 사용 또는 수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자연녹지지역	138,797	감)138,797	-	
일반공업지역	-	증)138,797	138,797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① 도 로

○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a	4	국지도로	418	광로 3-8 산88-1	산113-1	일반도로	-	경상북도고시 제2008-240 (2008.5.26)	-

② 주차장 : 변경

○ 주차장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계	-	-	-	926		926		
변경	1	노외주차장	용한리 산 810-93일원	926		926	경상북도고시제 2008-240 (2008.5.26)	위치 변경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변경 - 면적 : 926㎡ - 24면	○공장부지 분양계획 변경에 따른 기 결정된 노외주차장의 위치변경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계	-	-	-	-	8,963		8,963	-	
기정	1	녹 지	완충녹지	용한리 695-3일원	5,878		5,878	경상북도고시제2008-240 (2008.5.26)	
기정	1	녹 지	경관녹지	용한리 402-2일원	3,085		3,085	경상북도고시제2008-240 (2008.5.26)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1	A	137,871	산97번지 일원 (A-1)	-	137,871	감)76,093	61,778	
			-	산92번지 일원 (A-2)	-	증)37,750	37,750	
			-	산107-6번지 일원(A-3)	-	증)15,261	15,261	
			-	701 일원 (A-4)	-	증)18,246	18,246	
			-	산87-7 일원 (A-5)	-	증)4,836	4,836	도로
	B	1,740	810-42번지 일원 (B-1)	-	1,740			공공시설 (도로)
	C	926	산87-5일원 (C-1)	810-11일원 (C-1)	926			주차장
	D	5,878	695-3일원 (D-1)	-	5,878			완충녹지
	E	3,085	402-2일원 (E-1)	-	3,085			경관녹지
합 계			-		149,500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생산시설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폐율은 70%이하, 용적율은 350%이하, 높이는 5층이하로 계획하였으나, 실수요자의 요구(분양계획 변경에 의한 업종변경)에 용도 및 층수를 변경코자 함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변경	A-1	산97번지 일원	용 도	기정	생산시설용지(조선)
				변경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 이	기정	5층이하
				변경	**7층이하(35m이하)**
	A-2	산92번지 일원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면의 마감을 동일한수준으로 처리
			건축한계선		-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변경	A-3	산107-6번지 일원	용 도	기정	생산시설용지(조선)
				변경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 이	기정	5층이하
	A-4	701번지 일원		**변경**	**7층이하(35m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면의 마감을 동일한수준으로 처리
			건축한계선		-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포항시 산업단지지원과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포항시 용한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 및 관련법에 의해 의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열람이 필요한신분은 포항시 산업단지지원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시행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07. 8.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공고 제 2010 - 21 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1. 공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 장소·시간 : 포항시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 (09:00 ~ 18:00)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내용
   - ❍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문화콘텐츠센터 건립공사) 사업
   - ❍ 위 치 : 포항시 남구 상도동 111번지 외 83필지

❍ 사업내용 :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중복시설

•대지면적 : 54,583m2

•건축면적 : 5,184.96m2(연면적 :12,826.99m2)

•건폐율 : 9.50% , 용적률 : 17.56%

❍ 시행기간 : 2010실시계획 협의일 ~ 2012. 06. 30.

❍ 시 행 자 : 포항시장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 건축담당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270-5234)

포항시 공고 제 2010- 703호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7월 12일

○ **공고사항**

면허번호		경 북 제 1518호
어업의 종 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정 치 망 어 업
어업권자	주 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111-2번지
	성 명	김 영 식 외 15명
	주민등록번호	400821-1******
어업면허기간		2000. 8. 23.~2010. 8. 22.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지선
처분 내역		어 업 권 포 기 (20.0ha)
처분 년 월 일		2010. 7. 12.
면허번호		포 항 제 28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정 치 망 어 업
어업권자	주 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144번지
	성 명	김 헌 구 외 15명
	주민등록번호	561221-1******
어업면허 기간		2010.7.12.~2020.7. 11.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지선
처분 내역		어 업 면 허 (20.0ha)
처 분 년 월 일		2010. 7. 12.

포항시의회공고 제 6 호

第167回 浦項市議會(臨時會) 集會公告

地方自治法 第45條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第167回 浦項市議會(臨時會)를 다음과 같이 集會함을 公告합니다.

日時 : 2010年 7月 20日(火曜日) 午前 11時 30分

場所 : 浦項市議會 本會議場

2010년 7월 12일

浦項市議會議長 李 相 九